WONG & PARTNERS
MEMBER FIRM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Client Alert

December 2016

재정법안 2016 의 하일라이트

2016 년 10 월 21 일, 말레이시아의 수상이자 재정부장관인 YAB Dato' Sri Mohd Najib Tun Haji Abdul Razak 은 2017 년 말레이시아 국가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예산안 발표에 이어, 2016 년 10 월 25 일에 말레이시아 재정법안 (Malaysian Finance Bill 2016, "**Finance Bill**")은 하원에 상정되어 2016 년 11 월 23 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에서의 논의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법안에는 국가예산안에 발표된 수정안들 뿐 아니라 국가예산안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말레이시아 세법의 몇몇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법안에 포함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Malaysian Income Tax Act 1967, "**ITA**")의 핵심 수정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I. "로열티"의 정의 확장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ITA)의 "로열티"의 정의에 다음과 같은 지불 내역들 또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 모든 소프트웨어 혹은 다른 지식재산권들의 사용권 혹은 사용

(b) 인공위성, 케이블, 광섬유 혹은 기타 유사한 기술을 통해 대중에게 전송되는 이미지 혹은 소리 혹은 둘 다를 수신할 권리 혹은 수신

(c) 관련 인허가에서 명시한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사용권 혹은 사용

(d)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 라디오 혹은 TV 방송을 위한 테이프, 기술, 산업, 상업 혹은 과학 지식과 관련된 정보 혹은 노하우, 이미지 혹은 소리의 수신,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 혹은 사용과 관련된 전부 혹은 부분적 유예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초기 검토에서 다수의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 "**MIRB**")에서 발행한 E-Commerce 에 대한 조세 가이드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Yvonne Beh
+603 2298 7808
Yvonne.Beh@WongPartners.com

Yi Lyn Tan
+603 2298 7847
YiLyn.Tan@WongPartners.com

Joyce Khoo
+603 2299 6458
Joyce.Khoo@WongPartners.com

Soyeh Ki, 기 소 예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

국세청의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은 로열티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법안은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용어가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software-as-a-service, "**SaaS**")를 포함할 지 여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이미지 혹은 소리 혹은 둘 다를 수신할 권리 혹은 수신"과 관련하여 재정법안의 사용 언어를 살펴보면, 음악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로열티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법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은 재정법이 시행되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II. 소득세법 4A 조항 소득에 대한 파생으로 간주되는 규칙 (Deemed Derivation Rules)의 수정

현재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ITA)의 4A 조항은 동 법 109B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소득이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한하여만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4A 조항 소득이 말레이시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파생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로 현재 15A 조항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i) 만약 비용 지불의 책임이 정부, 주정부, 지역 당국 혹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자에게 있는 경우, (ii) 만약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비용이 부과된 경우.

그러나, 재정법안은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ITA)의 15A 조항을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파생 소득으로 간주하는 절을 제거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수정법안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해당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밖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된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말레이시아 밖에서 수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에게 지출된 해당 서비스 비용은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ITA) 109B 조항에 의거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재정법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은 재정법이 시행되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III.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도입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뿐 아니라 조세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AEOI**") 및 일반 보고시스템 (Common Reporting System, "**CRS**")을 도입하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준비와

관련하여, 재정법안은 국가간보고, 조세정보 자동교환 (AEOI), 일반 보고시스템 (CRS) 규칙들 (아직 해당 규칙들이 준비되지 않음)의 불이행에 대한 3 가지 새로운 페널티를 제안했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ITA) 조항	제안된 범죄	제안된 페널티
112A 조	국가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제출 불이행	유죄 판결시, RM 20,000 ~ RM 100,000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6 개월 징역
113A 조	요구되는 정보를 누락한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부정확한 세금 신고 혹은 정보 신고	유죄 판결시, RM 20,000 ~ RM 100,000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6 개월 징역
119B 조	상호행정지원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의 비준수	유죄 판결시, RM 20,000 ~ RM 100,000 벌금 그리고/혹은 최대 6 개월 징역

새로운 페널티의 적용을 소개하는 조항들이 마련된 것은 말레이시아가 국가간보고서 (CbCr), 조세정보 자동교환 (AEOI), 일반 보고시스템 (CRS)을 도입하는 방안을 곧 소개할 것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것입니다.

IV. 현재 면제되는 일부 소득세 철폐 / 제한

재정법안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 말레이시아 밖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원자재의 위탁 판매를 통한 말레이시아 내 거래를 통해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 그리고,

(b) 말레이시아에서 허가된 대출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행한 증권 혹은 증권위원회 (SC)가 허가한 링깃으로 발행된 이슬라믹 증권 / 채권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현 소득세 면제를 수정안을 포함합니다. 즉, 동 그룹내의 비거주자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말레이시아에서 링깃 외의 환으로 발행되고 증권위원회 (SC) 혹은 라부안금융위원회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승인한 이슬라믹 증권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범위가 제한되는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a) 동 그룹내에 있는 기업, 혹은

(b) 금융서비스법 2013 에 준하여 인허가를 받은 은행, 금융서비스법 2013 에 준하여 인허가를 받은 이슬라믹 은행 혹은 금융기업개발법 2002 산하의 개발금융기관

제안된 소득세 면제에 대한 철폐 혹은 제한은 특정 재무 구조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을 야기하는 바, 기업은 해당 재무 구조를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예부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2016 Wong & Partners. All rights reserved. Wong & Partners is a member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 Swiss Verein with member law firms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terminology used in professional service organizations, reference to a “partner” means a person who is a partner, or equivalent, in such a law firm. Similarly, reference to an “office” means an office of any such law firm.

This may qualify as “Attorney Advertising” requiring notice in some jurisdictions.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a similar outcome.